

보일러실 단열재 제거작업중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

재해일자	2015년 2월 14일	재해현황	사망 1명, 부상 7명
작업명	보일러실 벽면단열재 제거작업	재해장소	보일러실 내부

재해발생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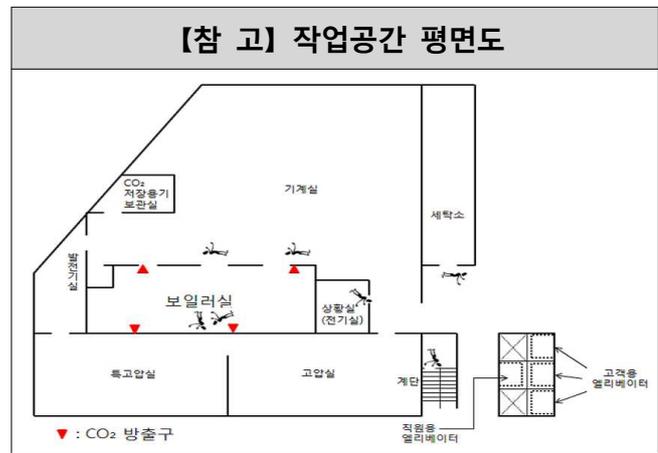


[보일러실 내부]

2015년 2월 14일 15:05분경 ○○호텔 보일러실 벽면단열재 제거작업을 위해 □□건설 소속근로자 6명이 보일러실에서 작업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으로 이산화탄소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였으며, 구조과정에서 호텔 근로자 2명이 부상한 재해임

재해발생 원인

1. CO₂ 소화설비의 CO₂ 자동방출 방지조치 미실시
2. 보일러실내 경고알람(사이렌) 미작동으로 작업자 대피 못함
3. 화재발생 경보 발생 시 근로자에게 경보운영 사항 미통보



재해예방 대책

1. 작업 중 CO₂소화설비의 CO₂ 자동 방출 방지조치 실시
 - CO₂ 소화구역내에서 작업 시 CO₂소화설비의 자동 작동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탐지설비 제어반의 자동/수동 전환스위치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전환 스위치 잠금 조치 혹은 안전표찰을 부착하여 임의조작을 금지토록 하며 감시인을 배치
2.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의 경보 기능 해제 금지조치 실시
 -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설비의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제어반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자를 교육하고 제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
3.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실시
 - 경보 30초 후 CO₂를 방출하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면 30초내에 방출구역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통보